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04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손 술 · 전종덕
민병덕 · 정춘생 · 임미애
이광희 · 정혜경 · 김준형
황운하 · 김태선 · 이주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서울 - 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.3원인 반면, 울산 - 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 - 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, 군포 - 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 - 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.

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,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‘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’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

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).
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”를 “공공요금, 그 밖의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속국도 통행료 결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6조(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,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, <u>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</u>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| <p>제16조(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공공요금, 그 밖의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